

水産共濟에 관한 研究

— 그 制度確立을 위하여 —

A Study on the Cooperative Insurance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xisting System

張 設 鎬

Soo Ho Chang

目 次

- | | |
|-----------------------|------------------|
| I. 序 論 | V. 水産共濟의 共濟目的 |
| II. 水産共濟와 保險과의 關係 | VI. 水産共濟의 補償水準 |
| III. 水産災害(危險)와 共濟의 効用 | VII. 水産共濟料率의 算定 |
| 1. 水産災害(危險) | 1. 共濟料率算定の 一般의要件 |
| 2. 水産共濟의 効用 | 2. 共濟料率의 算定方法 |
| IV. 水産共濟의 種類 | VII. 結 論 |

I. 序 論

水産業은 우리나라의 食糧生産面에서, 또는 外貨稼得面에서, 혹은 雇傭効果面에서 國民經濟上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水産業 자체내에 있어서는 中小規模의 沿近海 漁業 및 養殖漁業이 全水産業의 약 80%를 점하고 있는 原始産業으로서 그의 生産은 颶風 降雨 등 自然的要因에 의한 支配에서 거이 버서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최근에는 設상가상격으로 高度經濟成長政策과 重化學工業育成策에 수반하여 漁業經營의 基本環境인 水界의 水質이 汚濁되어 가므로서 漁業 生産은 더욱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이 水産業經營은 自然적, 人위적 요인에 의해서 資産上 人命상에 있어서 많은 被害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1973~1975年 사이에 우리나라 船舶事故의 年平均件數는 800餘件에 달하며 그 중의 거이 80%를 漁船이 점하고 있다. 人命被害는 1973年度의 경우 死亡과 실종이 327人, 救助人數는 8,880人이다. 그리고 1975年度에도 死亡 실종이 205人에 달하고 있다.

또한 1969년부터 1970년에 걸쳐 慶尙南道 昌原郡 熊東面 龍院里의 金養殖場을 휩쓴 갯병을 비롯하여 鎭海灣에서는 1972년부터 1975년에 걸쳐 10여차례의 毒水帶現象이 발생되었으며, 이것은 鎭海化學의 排水에 기인되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리고 1973年度 慶南巨濟灣을

中心으로 한 南海岸에 毒水帶가 發生함으로써 굴 수하식 養殖漁業의 피해 상황은 당해 년도 총생산량의 67.8%에 해당되는 21억원에 달했다고 한다.²⁾

이와 같이 광범한 해역에 걸쳐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의 水産災害(危險)는 水産業을 영위성과 經營不安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水産業의 진흥과 經營安定을 위해서는 먼저 水産災害로부터의 救濟對策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水産災害로부터의 救濟對策에는 일반적으로 災害에 대한 미연 防止策과 災害에 의한 손실의 감소를 위한 善後策을 고려할 수 있으나 水産業과 같은 第1次産業에 있어서는 災害의 예방과 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오로지 災害에 의한 손실을 가급적 감소시키기 위한 善後策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水産災害의 善後策으로서 가장 완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共濟制度나 保險制度和 같은 災害補償制度이다.

保險은 商業的인 利潤追求를 위한 保險市場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共濟는 그러한 保險市場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역을 거점으로 하여 존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水産事故 곧 水産經營상의 危險은 대단히 복잡하나 빈번하게 發生되고 水産業의 經濟的基盤이 빈약하고 영위하기 때문에, 곧 被保險者로서의 經濟基盤이 빈약하므로 保險에서는 소외하고 있다. 여기에 水産業者들 相互의 扶助를 기반으로 하여 水産共濟가 成立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災害가 빈번하고 복잡하며 經濟的 基盤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소외하고 있는 水産業에 있어서 相互扶助의인 共濟는 그러면 어떠한 點에 비중을 두고 存立되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몇가지 問題點을 分析的으로 提起해보고자 한다.

Ⅱ. 水産共濟와 保險과의 關係

保險의 定義에 대해서는 保險學者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그의 研究에 있어서도 經營學的側面 經濟學的側面 統計學的側面 法學的側面 또는 社會政策的側面 등에서 고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危險理論과 企業經營에 의한 危險管理(risk management)의側面에서도 研究되고 있다고 한다.³⁾

이와 같이 保險의 定義는 그의 研究의 觀點 곧 인식대상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方甲洙 教授는 「保險이란 간단히 말하여 危險의 結합을 통하여 不確實性(uncertainty)을 確實性

1) 국립수산물진흥원·수질오탁조사 사업보고, 1972~1973. 제15호, 제23호

2) 慶尙南道水産局: 굴養殖被害報告書, 1973年度, 參照

3) 方甲洙 著, 最新保險學, 博英社, 1975. p-26.

(certainty)으로 전환시키는 社會的 施設이다.]⁴⁾라고 規定하고 그 속에 共濟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다. 곧 方甲洙 教授는 保險과 共濟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명백한 記述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保險機關의 種類에서 營利機關과 非營利機關으로 대별하고 非營利機關속에 自家保險(self insurance)과 각종 相互保險機構(mutual insurance organization) 相互保險交換組織(reciprocal or Interinsurance exchnge) 및 共濟機關을 포함시키고 있다⁵⁾.

또한 日本의 庭田範秋 教授도 保險과 共濟를 다같이 經濟的 保障을 달성하기 위한 制度로서 규정하고 「共濟를 相互扶助 相互救濟를 위한 協同組合保險」⁶⁾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 兩者의 本質을 包括하고 있는 保險學說은 新豫算貨幣說 別稱 經濟的保障說뿐이다.]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宋基澈 教授⁸⁾와 吳萬植 教授⁹⁾등을 비롯하여 종래 대부분의 전통적인 保險學者들의 見解는 共濟를 保險의 類似施設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共濟와 保險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二大 경향이 있으나 兩者는 歷史的인 發生과정에서는 다 같이 同一한 기반에 의존하고 있다. 곧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濟와 保險의 發達過程을 보면 兩者는 다 같이 資本主義成立이전의 原始共同체에 있어서의 危險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共同耕作, 共同扶助, 共同防衛, 共同祭祀, 共同集合參與, 共同遺産, 共同相續 등의 諸共濟方式으로 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社會의 發展的인 分化過程을 통해서 分離 發達되어 온 것이다. 兩者의 결정적인 分化는 初期資本主義段階에 들어서면서 損害保障的인 目的과 生命保險的인 目的이 결합하여 近代의인 保險으로 發達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保險은 資本主義의 成長에 편승하여 發達했으나 後期 資本主義 中葉 이후에는 다시 전통적인 利潤追求의 保險과 社會福祉的인 保險으로 크게 分離되어 發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共濟는 資本主義의 成長發展에 있어서 그의 支配層으로부터 탈락된 群小事業體나 職場 또는 特定地域에서 곧 保險의 市場으로서 소외되고 있는 領域에서 종래의 相互扶助 相互救濟의 目的을 계승하여 危險에 대처하는 經濟制度로서 존속 發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市場의 차이에서 兩者間에는 약간의 면모를 달리하고 있다. 곧 保險에서는 일반적으로 加入者의 支拂하는 保險料는 우연적인 災害發生에서 받을 수 있는 保險金の 數學的 期待値에 상응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給付, 反對給付의 均衡原則) 또한 일정한 危

4) 前掲書. p-26.

5) 〃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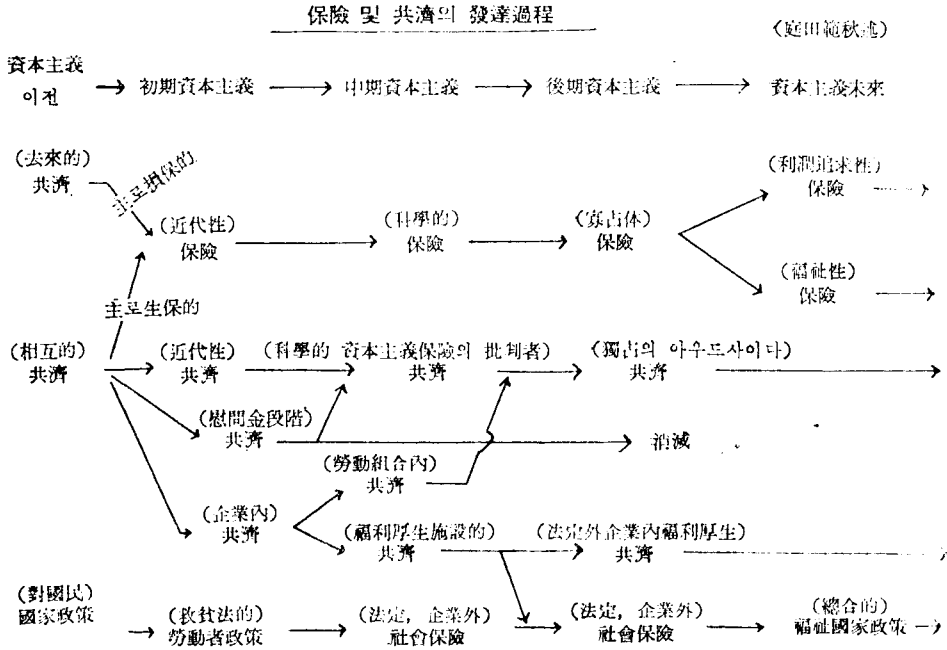
6) 庭田範秋. 保險と共濟をめぐる若干の考察. 三田商學研究, 第15卷 第1號, p-23.

7) 〃 〃 pp22~28.

8) 宋基澈著. 保險學. 日新社, 1962. p-25.

9) 吳萬植著. 保險論. 博英社, 1963. p-49.

<表-1>



險集團에 대해서 支拂할 수 있는 保險金の 總額은 保險事業의 支出과 收納해야 할 保險料의 總額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保險事業의 收入은 支出에 過不足이 없도록 計算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原則(收支相等의 原則)을 설계상 관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共濟에서는 職能的 地域的으로 특정된 사람들 사이의 相互扶助등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고 있으므로 때로는 그러한 原則이 무시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兩者間의 차이점도 어떤 면에서는 불명료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 그한 예로서는 日本의 漁業災害補償制度和 같은데서 볼 수 있다. 곧 日本의 漁業災害補償法에 의하면 「漁業共濟는 中小漁業者의 相互扶助의 精神을 基調로 하여」……「協同組織인 漁業協同組合 및 同連合會를 制度上의 組合員으로 하고 동시에 共濟制度를 利用할 수 있는 漁業者도 原則으로 組合에 加入하고 있는 漁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인 中小漁業者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系統組織을 基盤으로 하는 漁業共同團體의 基초적인 事業을 하고 있는 것을 共濟事業 및 再共濟事業이라 하고 政府가 하는 동일한 事業에 대해서 保險事業이라 稱한다」¹⁰⁾라고 하고 있다.

10) 日本 漁業災害補償法. 1964年制定, 第2條 參照.

水産共濟에 관한 硏究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共濟와 保險의 關係는 간단히 규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共濟와 保險은 그 本質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學者間에 見解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원래 共濟와 保險은 다 같이 특정의 우연적인 災害發生에 대비하기 위해서 多數者가 일정한 金額 곧 共濟料 또는 保險料라고 하는 것을 거출하여 共同的인 비축을 함으로서 災害가 실제로 發生했을 경우에 그의 共同備蓄金 基金에서 일정한 給付를 하는 經濟制度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水産業者 相互間의 相互扶助의 精神을 기반으로 하는 非營利的인 水産業 災害補償制度和 같은 것을 共濟로 규정해 두고저 한다.

水産共濟를 이렇게 규정할 때 共濟料 또는 共濟金에 대한 國家財政 支授이 있는 경우에도 共濟라고 할 수 있을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共濟料 또는 共濟金(補償金)에 대한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로 부터의 補助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共濟의 本質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역시 共濟의 定義로서 규정해 두고저 한다. 그러한 補助의 대상에 대해서는 國家的 次元에서는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國家自体를 하나의 共濟料 納入者로 간주한다면 별로 문제시 할 것은 없을 것이다. 곧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간여하여 많은 補助金を 지급하는 災害補償制度라 하더라도 그의 기반이 漁民의 相互扶助의 相互救助의 인데 있다고 한다면 그의 기본 정신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 있어서는 共濟와 政府補助에 대한 觀念상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災害補助이라고 할 때에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의 被害에 대한 過大申告가 된다든가 혹은 補助金額이 過少하게 된다든가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며는 制度自体의 育成에도 問題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共濟라고 하면 災害發生에 對備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漁民들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相互扶助의 精神이 基調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漁民의 의식에서는 과대와 허위 및 엇박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혹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頓상에 불과할 것이며 장기적인 면에서는 漁民들의 良心과 相互 견제, 忠告 등의 自制에 의해서 쉽게 해소되어 갈 것이므로 政府支授을 가미한 災害補償制度도 共濟로 定義해 두는 것이 合理的이고 實利的이라고 생각된다.

Ⅲ. 水産災害(危險)와 共濟의 效用

1. 水産災害(危險)

水産共濟는 水産經營에 있어서 발생하는 災害 곧 危險을 대상으로 한다. 水産經營에 있어서의 危險이란 우연적이고 불확실성하에서 발생하는 災害이다. 水産經營상의 災害 곧 水産業에 있어서의 危險이란 예를 들면 漁船의 損傷, 行方不明, 침몰, 기관고장 그의 漁船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漁具의 손괴, 滅失, 流失 기타 漁具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고와 그 외에

氣象 및 海況의 原因에 의해서 발생하는 災害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養殖業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김 養殖業經營에 있어서의 김의 發芽不良, 腐敗(赤色腐敗, 白色腐敗). 病虫의 발생에 의한 被害 風浪에 의한 김의 流失, 그 외에 汚水 廢混 廢油의 遺棄 또는 漏泄에 의해서 海水가 汚染되어 받는 被害의 발생 및 第三者의 行爲에 의한 損害의 발생 도난에 의한 손해 발생 戰爭 기타 變亂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 등 많은 종류의 피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水産業經營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災害는 우연적이고 불확실성하에서의 사고이며, 이러한 것은 水産業經營상에서는 항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水産業經營상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災害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水産共濟이다.

理論상에 있어서 共濟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災害 곧 危險이란 측정 가능한 不確實性¹¹⁾ 또는 어떤 所望스럽지 못한 現象의 발생에 관한 객관화된 不確實性¹²⁾ 혹은 損失에 관한 不確實性¹³⁾ 確率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개개 危險의 결합¹⁴⁾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不確實性이란 장래에 발생할 現象에 관하여 예견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서 곧 「주어진 여건에서 人間이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危險을 의식함으로서 생기는 現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不確實性하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災害를 대상으로 하여 水産共濟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간단히 요약하면 水産共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水産災害 곧 水産危險은 첫째, 는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는 그 災害가 발생하는 때와 場所가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共濟의 대상이 되는 災害의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共濟料의 산출기초가 되는 科學的인 資料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째는, 共濟對象이 될 수 있는 災害는 상당수의 同質성과 多數성을 가져야 한다. 곧 大數의 法則을 적용하여 平均損失을 科學的으로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생개수가 많고 또한 동일한 性質의 災害이라야 한다. 네째로는 共濟對象이 될 수 있는 災害는 그것이 한번 발생하여 그 共濟集團 全部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性質의 災害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災害를 統計的으로 捕捉하기 어렵고 따라서 共濟料를 科學的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11) Frank H, Knight,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 mitflin Company 1921. p-233.

12) Allen, H. willett, The Economic Theory of Risk and Insurance ;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1. pp-10.

13) Herberts. Denen-berg and Others, Risk and Insuran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4. p-4.

14) Irving Pfeffer, Insurance and Economic Theory,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56. p-42.

水産共濟에 관한 研究

상술한 要件을 구비하는 水産災害를 곧 水産共濟事故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共濟事故는 실제상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곧 共濟의 種類에 따라 共濟對象이 될 수도 있고 除外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갯병(赤潮)에 의해서 漁業의 對象物인 魚類나 貝藻類가 죽어 그의 漁獲金額의 감소를 초래했을 경우 漁獲共濟에서는 그 漁獲金額의 감소에 대해서 무조건 賠償金을 補填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감소의 원인이 人爲的인 경우는 損害賠償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水産共濟事故는 共濟主体에 의해서 임의로 취사선택 된다. 그러나 災害의 原因에 있어서 人爲的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水産共濟對象에서 제외한 예를들면 전술한 갯병의 경우 그것이 自然的 要因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것에 의해서 共濟目的物의 死亡事故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당연한 共濟事故로 인정하는가 하면, 그 갯병이 都市의 生活廢水나 工場廢水 등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共濟事故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事故는 加害者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의한 被害補償을 加害者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水産災害가 第三者의 行爲나 污水 廢液 등 有害物의 遺棄 또는 漏泄에 의한 水質汚染에서 발생한 損害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加害者에 대해서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水産共濟 등과 같이 第1次 産業의 災害對策으로서의 共濟補償에서는 오로지 不可抗力의인 自然的 要因에 의한 우연적인 災害에 대해서만 共濟對象事故로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思考인 것 같다. 그러나 水産業에 있어서는 被害의 原因者가 명백히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被害請求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갯병의 발생 때카니즘을 보면 그것이 自然的 要因과 人爲的 要因이 서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人爲的 要因이라 하더라도 污水 廢液 등만으로서 그의 구체적인 原因者를 특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水銀 PCB 油濁과 같은 것도 漁獲被害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역시 구체적인 原因者를 특정지을 수 없는데서 사실상 原因者 부담의 원칙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정의 災害에 대해서는 共濟對象으로서 救濟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人爲的 要因에 의한 被害라고 하더라도 첫째는, 그 原因者를 구체적으로 특정지을 수 없는데서 損害賠償請求가 불가능하며 둘째로는, 이러한 종류의 災害가 共濟對象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災害에 의한 被害는 水産經營者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水産經營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災害를 水産經營者만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가혹하며 영외한 水産業者의 거출금만을 基金으로 하는 共濟에서의 補償이 不可能하다. 이러한 不合理性은 다른 方途에서도 당연히 救濟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加害者集團이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 등에

의해서 補償하는 制度의 확립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水産業에 있어서의 각종 災害가 共濟事故로 되기 위해서는 그 災害의 발생원인으로 보아 自然的要因에 의한 災害만을 對象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전술한바와 같이 人爲的 原因에 의한 災害라 하더라도 그의 原因者를 특정 지을수 없는 災害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共濟事故로서 救濟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加害者集團 또는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에서 補償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2. 水産共濟의 効用

水産共濟의 目的은 水産業의 經營災害로 부터 救濟하여 水産經營活動의 再生産을 확보할 수 있도록 費用 또는 被害를 補填하는데 있다. 이러한 共濟의 効用을 水産經營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水産共濟制度는 水産經營者들이 小額의 共濟料 곧 합리적인 費用을 부담함으로써 예척 불가능한 大災害에 의한 손실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費用의 効率的支出)

둘째, 그러한 부담에 의해서 만일 災害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의 被害에 대한 원상회복 자금으로서 많은 共濟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危險善後策)

셋째, 水産經營者는 共濟金으로서 安定된 再生産을 지속할 수 있으며 또한 水産勞動賃金の 계속적 고정적인 支拂을 할 수 있으므로서 영식경영의 가장 큰 고민인 勞動力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勞務調達의 容易性)

넷째, 共濟에 의한 災害對策이 가능하게 되며는 資産의 擔保價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水産經營의 信用이 提高된다. 곧 水産金融의 정상화와 금리의 절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擔保 및 信用의 提高)

다섯째, 水産經營者 및 그 從事者의 家計상의 궁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서 漁民의 生活安定과 向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漁民의 生活向上)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利点이외에 또한 水産共濟制度의 구성여하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도 많은 利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곧 보통의 保險制度에서는 「收支均衡의 原則」이라고 하여 保險料의 金額을 加入者가 부담하는 것이 原則이나 共濟制度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原則을 고수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그에 의한 부족금은 國家나 特別基金에서 補助하는 경우가 있다. 곧 被共濟者와 國家 또는 加害者集團에서 共濟料를 분담할 수도 있다. 共濟料를 被共濟者와 國家 또는 加害者集團이 共同으로 부담하게 될지라도 共濟金은 共濟加入者에게만 지불되는 것이므로 契約者 곧 被共濟者는 剩餘의 共濟金까지 받게 되므로서 利益을 보게 되는 일종의 所得補償의인 機能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共濟制度는 水産經營者에 많은 利益을 주게 될 것이나 그기에는 이러한 利點뿐 아니라 다소의 短點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직되는 共濟의 단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共濟料의 지불은 災害의 발생이 있는 被共濟者에 대해서는 오로지 일방적인 불입이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둘째, 따라서 共濟料의 부담은 漁民의 支出增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共濟加入의 條件 등에서 水産業의 施設의 改善 및 經營改善 등을 요구함으로써 漁民의 資本支出과 勞力을 강요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共濟制度가 漁民에 미치는 영향에는 長短點이 있으나 短點 보다는 長點이 많으며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少額이며 合理的인 費用부담을 함으로서 불의의 災害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長點이 있으므로 그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水産經營의 安定에 크게 기여하는 有益한 經濟制度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水産共濟制度는 水産經營상의 危險이 날로 증가되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水産共濟의 種類

水産共濟의 種類는 立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共濟의 對象과 目的의 설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日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水産共濟의 種類를 파악하는데 끝이고저 한다.

우리나라의 水産共濟는 1937年 9월에 설립된 朝鮮漁業組合中央會에서 실시한 職員共濟事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解放後에는 1945年 12월에 설립된 大韓水産中央會에 共濟課가 설치되어 日帝下의 朝鮮水産業會에서 실시하던 職員共濟事業을 계승하고 또한 漁船普通損害共濟를 신설하였으며, 1958年 4월에는 다시 船員共濟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水産業協同組合의 共濟事業으로서는 1962年 4월에 신설된 水協中央會의 발족과 더불어 종래의 大韓水産中央會의 共濟事業을 인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保險業法의 적용을 받지않는 水協法 第132條 第1項 第6號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水協共濟는 전기 大韓水産中央會에서 실시하는 共濟이외에 1963年 10월에는 새로히 長期性積立法의 漁船滿期共濟를 신설하고 1967年 6월에는 다시 水産製造業 및 加工業과 其他 水産陸上施設을 대상으로 하는 水産施設共濟를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 水協中央會에서 실시하고 있는 共濟의 種類를 보면 漁船共濟 漁具共濟 施設共濟 生命共濟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의 共濟目的에 는 다음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

〈表一2〉 우리나라의 水産共濟種類

水協共濟	{	—漁船共濟……	{ 漁船普通共濟 漁船特殊共濟 漁船滿期共濟
		—漁具共濟……	漁具共濟
		—施設共濟……	{ 火災共濟 風水害共濟
	—生命共濟……	{ 船員共濟 厚生共濟 女子共濟	

資料：水協中央會

日本에 있어서의 水産共濟事業은 1950年 12月 10日 水協法の 개정에 의해서 1951年 1月 20日 全國水産業協同組合共濟會의 創立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¹⁵⁾ 당초에는 火災共濟로 부터 시작하여 1952년에는 漁協任職員의 退職共濟를, 그리고 1955년에는 厚生共濟, 1957年 5月에는 漁業共濟規程에 관한 農林省의 인가를 얻어 漁業共濟의 試驗實施를 시작했든 것이다.¹⁶⁾

漁業共濟의 試驗實施는 1957年 10月부터 1963년까지 7年間에 걸쳐 18個縣(우리나라의 道에 해당됨)을 대상으로 하여 漁獲共濟와 漁具共濟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그 試驗實施의 결과를 기초로하여 1964年 6月 漁業災害補償法이 제정됨으로서 본격적으로 日本漁民의 숙원이든 항구적인 共濟制度가 실시되게 되었다고 한다.¹⁷⁾

현재 실시되고 있는 日本의 水産共濟는 沿海의 各都道府縣의 漁協系統을 기반으로 하여 漁業共濟組合이 설립되어 共濟의 元受를 하고 전국의 漁業共濟組合이 構成員이 되어 漁業共濟組合聯合會를 설립하여 再共濟事業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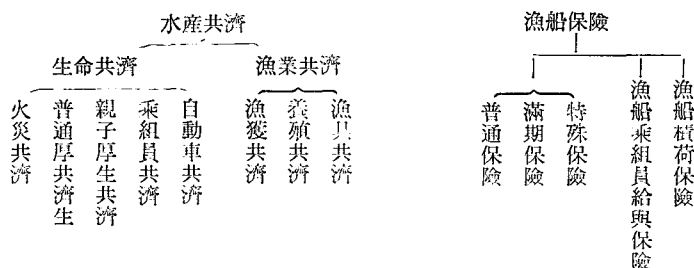
이와 같이하여 현재 日本에 있어서의 共濟事業은 종래 漁業協同組合共濟會에서 실시하고 있는 火災共濟 普通厚生共濟 親子厚生共濟 乘組員(船員)厚生共濟와 自動車共濟를 비롯하여 漁業災害補償法에 의한 漁獲共濟 漁具共濟 養殖共濟 등이 있다. 이것을 表示하면 다음 表一3에서 보는바와 같다.

그리고 漁船에 대해서는 별도로 保險이 오래전 부터 실시되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의 漁船保險은 멀리 1908년에 설립된 帝國機帆船海上保險會社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¹⁸⁾. 이 海上保險會社에 의한 帆船 漁船 獵船 및 漁具를 대상으로 하는 保險은 1937年 3月 公布된 漁船保險法 및 漁船再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해서 國營保險으로 되었으며, 다시 1942年4月

15) 日本水産廳 刊. 水産業協同組合制度史 2卷, pp.485~491. 參照.

16) / /
17) / /
18) / 1卷, pp. 670~681. 參照

〈表-3〉 日本의 水産業共濟 및 漁船保險 体系



부터 1947年 2月까지는 戰時保險으로 改編되었다가¹⁹⁾ 그 戰時保險이 戰後 폐지됨으로서 1952年 4月 漁船損害補償法の 실시로 현재에는 漁船保險 漁船乘組員給與保險 漁船積荷保險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保險에 대한 再保險은 政府가 인수하고 있다. 곧 日本의 漁船保險은 水産共濟와는 별도로 政府의 再保險事業을 배경으로 하여 漁船保險中央會 및 漁船保險組合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⁰⁾

이상에서 우리나라와 日本의 水産共濟에 관하여 沿革을 토대로 그의 種類를 보았으나 여기에서 兩國의 水産共濟事業에 관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漁船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漁船共濟로서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서 日本에서는 共濟事業과는 별도로 特殊法에 의한 독립된 保險事業으로서 영위되고 있다. 그 이외에 日本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養殖共濟와 自動車共濟 등이 있다. 養殖共濟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研究중에 있으므로 미구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나 自動車共濟와 같은 資産共濟에 대해서는 異色的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資産共濟는 漁民 또는 漁村이라는 特定社會의 生活에서 볼 때 오로지 生産關係에 한정된 共濟뿐 아니라, 生活關係共濟의 개발로서 「풍요한 漁村」 「편리한 漁村生活」이라는 多角經濟圈形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며 漁村民의 私有財産保護를 목적으로 하는 의미에서도 社會 生活共濟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兩國의 水産共濟를 기초로하여 금후 개발가능한 共濟까지를 고려하여 水産共濟의 種類와 体系化를 시도해 보면 먼저 漁民厚生共濟 漁民子女共濟 및 日本의 親子厚生共濟 普通厚生共濟 등은 모두 人間 또는 人体自體의 生存과 死亡에 대비하는 人的共濟로서 이것은 순수한 生命共濟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船員共濟 및 乘組員厚生共濟란 商品으로서의 勞動力의 經濟的價値의 상실 감소 곧 死亡 廢疾 失業과 老齡 傷害 疾病 등에 의한 勞動力의 상실과 감소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19) 前掲書 1卷, pp670~681.

20) 前掲書 2卷, pp503~528,

로서 이것은 損害의 性質을 가지는 生命共濟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兩者는 人的共濟로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勞動力을 商品으로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物的共濟의 범주속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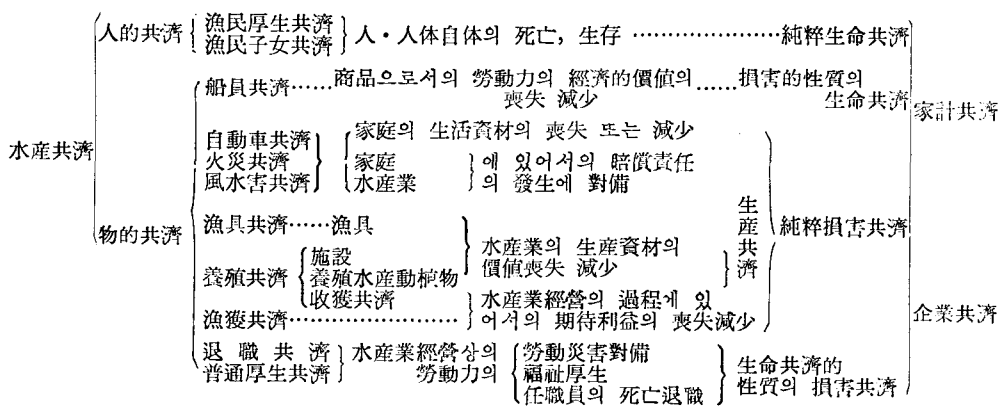
다음에 漁具共濟 또는 養殖共濟에 있어서의 施設과 養殖生物 등의 共濟는 水産業의 生産資材의 價値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비되는 共濟이며 또한 漁獲共濟 養殖金額共濟 등은 水産經營過程에 있어서의 期待利益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비되는 共濟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水協이나 漁協의 任職員의 死亡 退職과 그들의 勞動災害에 대한 대비로서 또는 그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共濟 등은 水産經營상의 勞動力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일종의 生命共濟의 性質을 가지는 損害共濟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金庫共濟로서 개발가능한 것으로서 몇가지 예를 들면 施設共濟에 있어서는 建物과 通貨 有價證券 印紙 郵票 및 이에 준하는 것과 組合 혹은 個人企業이 가지는 教本設計圖 圖案 鑄型 證書 帳簿 및 이에 준하는 것등의 動産 등에 대해서도 火災나 風水害가 발생했을 때에 그에 대한 賠償責任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에 대비하는 共濟등도 순수한 損害共濟로서 개척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순수한 生命共濟 損害의 性質을 가지는 生命共濟 및 家庭의 生活資材나 기타 家庭生活의 賠償責任의 발생에 대비하는 순수 손해공제등은 家計共濟로서 포괄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企業共濟로서 포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体系化하여 表示하면 다음 <表-4>와 같다.

<表-4> 水産共濟의 種類와 体系



V. 水産共濟의 共濟目的

水産共濟의 共濟目的에 대해서는 앞에서 고찰한 水産業의 種類 및 生産要素 또는 水産事故 등에 의해서 選擇的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理論上에서 보면 水産共濟의 共濟目的은 모든 水産業과 生産要素 및 그에 關係하고 있는 각종 要素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상에 있어서는 첫째로 共濟事業이란 一般保險의 對象에서 제외된 분야를 영역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로는 共濟 실시상에 있어서의 効果와 技術상의 難易問題 등에서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水産業을 전체적으로나 部分的으로 포괄하여 保險對象으로 하고 있는 制度와 保險企業은 존재하지 않으나 保險目的에서 보면 漁船 加工施設 등의 固定資産에 대해서는 船舶保險 施設災害火災保險등의 目的으로서 개별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保險의 被保險者는 주로 資本企業으로서 그것은 金融上 또는 資金保全상의 他律的 條件에 의해서 加入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水産業構造상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中小漁業에 대해서는 일반 金融機關 또는 일반 保險會社 등에서 資金融資 또는 保險加入이 억제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一般保險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곧 水産業에 있어서는 資本企業을 제외하고는 일반 保險의 대상영역에서 소외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特殊保險이나 共濟가 대상영역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는도 漁船保險과 漁業共濟가 一般保險과는 별도로 特殊災害補償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²¹⁾

이와같이 소외되고 있는 水産業을 對象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水協中央會에서 水協法에 의한 水産共濟를 실시하고 있다. 水協共濟의 내용을 보면 전술한 바와같이 漁船共濟 漁具共濟 船員共濟 施設共濟 등으로서 주로 漁業(狹義)과 製造加工業에만 한정되고 있으며 養殖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문제로서는 上記한 水産共濟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漁業과 製造加工業의 物的施設과 人的施設 등에 관해서 共濟目的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養殖業에 대한 共濟와 또한 漁業에 있어서는도 生産에 대한 共濟는 아직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종래 그에 대한 効果測定과 實施상에 있어서의 技術的인 諸問題의 解決困難性에서 지금까지 실시가 보류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水産共濟 目的의 설정은 共濟主体에 의해서 選擇的이나 일반적으로 水産共濟目的의 중추는 生産에 관한 物的施設과 生産金額(收穫金額) 및 人的施設 등으로 크게 區分될 수 있다.

21) 日本에 있어서의 漁船保險은 漁船災害補償法(1952年制定)에 의해서, 漁業共濟는 漁業災害補償法(1962年制定)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物的施設은 漁船 漁具 및 養殖施設과 水産物の 製造加工施設등이며 人的施設은 水産生産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각종 災害와 廢老對策으로서의 退職 失業 및 生命 등에 대해서 共濟目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들의 家族과 生活關係에 대한 각종 共濟目的의 설정도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生産目的物 자체를 共濟目的으로 하는 것은 주로 養殖漁業에서만 가능하다. 漁業의 目的物에 대해서는 消極的漁法이나 積極的漁法을 막론하고 그 自体의 物量 곧 生物 自体의 成長에 관해서 人爲的으로 成育管理 할 수 없기 때문에 共濟目的이 되기에는 곤란한 것이다.

그러므로 水産共濟에 있어서 共濟目的으로서 가장 특색있는 것은 施設物 과 生産金額 및 經營目的物 등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개별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施設物 = 施設共濟

水産生産施設을 共濟目的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水産業의 重要 生産手段이며 따라서 水産經營에 있어서는 불가결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水産施設에 대한 共濟란 그 施設物에 대해서 어떤 事故(損害)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共濟事故로 하여 그의 被害額에 대해서 共濟金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物的損害保險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物的施設을 共濟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족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곧 첫째, 水産共濟目的이 되는 水産生産 施設은 그 生産에 있어서 基本的施設이라야 한다.

둘째, 水産共濟目的이 되는 水産生産施設은 그 全体로서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독립된 주요 資材는 최소한 일정 漁業經營期間(한 漁期이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耐久性을 가지며 또한 品質의 規格化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셋째, 그 施設의 全部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독립된 資材는 價格의 객관화가 가능하고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넷째, 그 施設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독립된 資材의 數量에 대한 評價는 單位 施設에 필요한 基準數量에 限定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 施設에 대한 被害의 調査 및 評價는 技術的으로 용이하고 또한 그에 대한 諸費用이 低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諸要件을 충족하는 物的施設의 基本單位集團을 共濟目的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同種의 共濟目的에 대해서는 手續의 편의상 基本單位 施設에 대한 基本標準(施設物量)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실제상에 있어서는 水産業의 業種에 따라 行政官廳이나 水協 등의 業務指針規準으로서의 單位施設基準 등이 있으므로 그것에 準하는 경우가 좋으며, 그것이 非現實的인 경우에는 業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施設과 規模를 調査하여 적절한 標準單位施設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水産經營目的物 = 生物共濟

水産經營의 目的物인 生物에 대한 共濟란 곧 방어 도미 새우 굴 김 미역 다시마 등등과 같이 각종 養殖經營의 目的이 되는 生物을 共濟目的으로 하는 일종의 生物共濟(現物共濟)의 方法이다.

生物共濟란 그 生物의 成育하는 일생동안에 있어서 받는 어떤 危險 곧 그 養殖經營의 開始(共濟加入日)로부터 그 養殖經營의 終了(최종捕獲)에 이르기까지의 目的物의 成長過程에 있어서 그의 정상적인 成長에 어떠한 危險이 발생했을 때 그 危險을 共濟事故로 하여 그에 대한 被害金額을 補償해 주는 일종의 生物保險方法이다.

이와같이 生物共濟에 있어서는 共濟目的인 生物의 정상적인 成長에 대한 危險을 共濟事故로 하는 것이므로 生物의 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危險을 더하히 파악하는가의 問題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漁場이 水界라고 하는 점에 基礎를 두는 漁場의 特性에 의한 支配力에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危險의 原因別 發生地域別로 集團化하여 危險을 評價하는 方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表面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水産物의 生物에 대한 危險 곧 被害는 그의 발생원인과 해역 또는 계절에 의해서 종류와 정도 및 규모를 현저히 달리하며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그러한 危險의 原因과 정도 및 규모의 파악을 위해서는 技術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費用을 수반한다.

셋째, 生物에 대한 危險은 養殖方法과 技術 및 管理상의 차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生物共濟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1) 水産共濟에 있어서 生物被害(危險)의 조사와 평가를 위해서는 그의 專門家에 의한 前담조사평가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 (2) 水産共濟에 있어서의 危險의 分類는 原因別 海域別 및 程度別로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의 單位分類規模는 過大 過小하지 않은 적정규모라야 할 것이다.
- (3) 또한 生物共濟는 危險의 발생시기와 成育期間(共濟期間)과의 銜을 적절히 함으로써 共濟金과 共濟料率과의 관계를 公平하게 유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문제 는 실제상에 있어서는 그것을 여하히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生物共濟 目的의 成敗 여하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生物共濟의 실시여부는 充分한 기초자료와 검토를 거쳐 실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生産金額(收穫金額) = 金額共濟(收穫共濟)

生産金額 곧 收穫共濟란 漁業(養殖)經營에 있어서의 生産價額의 감소를 共濟의 대상으로

하는 方法이다. 곧 漁業經營에 의해서 과거에 나타난 生産價額으로서 일정한 基準價額을 설정하여 共濟 加入年度의 漁業生産金額이 그 基準價額에 도달되지 못했을 때에 그에 대한 差額을 共濟事故로 하여 그 差額에 대한 일정한 比率의 共濟金を 지불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收穫保險方法이다.

이 金額共濟는 價格要素를 반영하는 제도임으로 이 共濟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生産價額의 파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生産價額의 파악은 보통 전체 生産者(被共濟者)와 需要者와의 사이에 체결된 일정한 協定價格이나 또는 漁協의 共販價額과 같은 價格決定機構에 의한 일반 價格(平均價格)으로서 基準價格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金額共濟는 漁協의 共販制度가 잘 정비되어 있는 業種이나, 또는 漁協의 共販制度를 실시함으로써 價格의 平準化 安定化를 도모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의 추진 방향과 일치시키므로써 共同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를 들면 굴이나 김의 경우를 볼 때 굴의 價格을 굴수하식 양식어협과 실수요자인 加工業者간에 체결되는 協定價格에 의해서 매년 生産량의 약 80%가 去來되고 있다. 그리고 김의 경우는 종래 인기 수출품으로서 오로지 수출價格에 의해서 수집 판매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自由販賣制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漁協에서는 共販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莞島漁協의 경우를 보면 1975年度 管内 總김生産량의 70~80%를 共販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김의 경우도 각 漁協의 共販價格을 基準價格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어 가고 있다. 곧 金額共濟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基準價格은 漁協의 共販事業이 정상제도에 올라있는 生産物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시 할 것이 없으며 다만 共販制나 協定價格制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生産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他面에서 보면 金額共濟는 漁協의 共販事業의 추진방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곧 漁協共販事業의 추진을 위한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額共濟는 水協共濟事業으로서 추진되는 경우는 他事業과의 關係에서 유기성을 가지므로 組合員의 協同心 양양과 組織力 強化를 위해서도 적절한 理想的인 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金額共濟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金額共濟에 있어서의 價格要素는 각종 危險에 의한 不況의 補償은 물론 生産過剩이나 輸出不振등과 같은 현상에서 오는 價格低下가 經營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반영하는 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價格變動에 의한 不況에서 오는 損失까지를 業者들 相互에 의한 扶助로서의 共濟料에서 補填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共濟와는 다른 각도에서 對策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價格支持制度등) 그에 대한 對策만 강구된다면 유감없는 훌륭한 制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2) 細田忠雄, 1975年 5月 17日 漁業災害補償法の 改正, 漁村 1975年 10月號, pp49~53.

水産共濟에 관한 研究

이러한 점에서 日本에서는 契約年度의 生産價額이 基準價額에 미달될 경우라 하더라도 그 年度의 單位生産量의 基準生産量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서만 共濟金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³⁾ 곧 生産數量이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生産金額의 변동은 전술한 바와 같은 社會經濟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에 대한 補填은 제외하고 오로지 불가항력적인 自然的 要因에 의한 生産金額의 변동에 대해서만 補填한다는 본래의 共濟精神에 입각하여 基準生産量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서만 共濟金支拂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金額共濟는 生産技術의 革新에 적응될 수 있고 따라서 共濟 속에 價格要素가 도입됨으로서 生産者의 豊凶에 대한 감각을 자극하는 事故判定을 할 수 있는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經營安定에 기여하는 理想的인 共濟制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水産共濟의 補償水準

共濟의 補償水準이란 共濟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事故에 대한 共濟金을 어느 정도로 지급하느냐의 문제로서 곧 補償水準은 共濟事故의 判定기준이 되는 동시에 실무상에 있어서는 共濟限度額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補償水準의 결정은 구체적으로는 그의 金額算出方法(共濟限度額)의 여하에 따라서 상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補償水準 自体에 있다. 곧 補償水準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령 補償을 받을지라도 再生産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든가 또는 발생한 事故의 被害金額이 補償水準 이하로 내려지는 경우가 없을 때는 사실상 共濟料만 손해가 되었다든가 하는 인식을 주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補償水準이 과다할 경우에는 給付內容은 충실하게 되나 保險原理를 도입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共濟料率의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共濟料率이 높아지게 되며는 被共濟者의 부담이 가중하게 됨으로 영식자의 加入은 자연 억제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共濟의 補償水準의 결정은 被共濟者에 대한 共濟效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共濟事業 자체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 문제가 되기도 한다.

共濟補償水準의 결정 곧 共濟의 적정 보상수준의 결정을 위한 方法에는 經費補償方式과 收入金額(生産金額) 補償方式이 있다.

經費補償方式이란 共濟責任期間중 그의 加入日 곧 共濟開始日로부터 共濟事故가 발생했을 때까지의 期間동안에 共濟目的을 위해서 실제로 투입된 經費의 金額 혹은 그 일부를 補償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經費의 산출은 燃油費, 漁具費, 勞務費, 餌料費, 漁船減價償却費 등과 같이 어느 業者에게나 공동적으로 투입되는 명백한 經費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타의 管理費, 諸豫備費 및 福利厚生費 등과 같이 業者間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費用의 산출에 대해서는 그의 客觀化가 대단히 곤란하며 또한 減價償却費

23) 日本의 漁業災害補償法(1975年 5月 17日改正) 附則 第2條 12 參照.

수 산 경 영 론 집

에 대해서도 그것을 經費 속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다. 減價償却費는 自己金融의 性質을 가지므로 經費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같이 共濟事故에 대한 經費의 산출을 실제로 하나 하나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고 利害當事者間에 항상 문제가 야기되므로 최근 日本에서는 共濟目的의 生産金額에서 점하는 經費의 比率로서 추산하고 있다.²⁴⁾ 곧 당해 水産業의 經營成果인 生産金額에서 經費部分이 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최고 補償水準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生産金額의 추세와 生産經費의 추세를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兩者의 관계比率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生産金額의 추세는 보통 과거 수년간의 生産實績에 대한 年平均値로 하며 年平均値의 산출 기산 연수는 계약년도 전의 3~5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生産經費의 추산에 대해서는 보통 經營에 있어서는 년년의 生産金額과 生産經費는 대단히 깊은 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生産金額에 대한 일정 比率로서 生産經費相等額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生産經費는 실제상 經營의 實態에 따라 變動의이므로 그 生産經費相等額의 산출 比率는 被共濟者가 일정범위에서 적절한 比率를 선택하도록 운영한다.

다음에 收入金額(生産金額) 補償方式이란 그 共濟目的의 生産金額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곧 基準生産金額과 실제 生産金額과의 차액을 事故(被害金額)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方式에서는 基準生産金額을 여하히 결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다. 基準生産金額의 산출은 계약 전 최근 수년간의 生産實績에 대한 年平均値로 하며 그의 年平均値 산출의 기산 연수를 몇 년으로 하는가에 따라 또는 年平均値의 산출 방법여하에 따라 補償水準에 다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年平均値 산출의 기산 연수는 보통 3~5년으로 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두 方式에서 어느것이 보다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補償目的의 설정과 共濟目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일괄하여 요약할 수는 없으며 方法 自体의 目的도 다소 차이를 가진다. 곧 經費補償方式에서는 共濟事故에 의한 災害의 回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收入金額補償方式에서는 經營安定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經費補償方式에서는 水産經營에 있어서 발생된 被害의 회복으로 經營活動(生産活動)을 再生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어떠한 災害나 不況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費用이 확보되므로서 再生産活動을 가능하게 하는데 補償基準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方式에서는 再生産活動을 가능하게 하는 費用의 충족을 위하여 共濟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事故로 인하여 실제로 減失된 諸費用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에 相等하는 共濟金을 보상 지급한다.

이에 대해서 收入金額補償方式에서는 被共濟體의 정상적인 收入金額 곧 生産金額(基準生産金額)과 실제 生産金額과의 차액을 共濟事故金額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共濟金을 보상

24) 前掲, 漁業災害補償法第百十一條(共濟限度額)參照.

水産共濟에 관한 研究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事業체의 정상經營의 유지 곧 經營安定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共濟의 目的이 經營安定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經費補償方式보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원래 産業災害對策으로서의 共濟目的은 그 産業經營의 安定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方式은 生産金額이 自然的 要因에 의해서 현저한 豊凶을 초래하고 또한 그의 生産要素인 物的施設이나 目的物(生物等)에 事故(危險)가 현저하며 그의 原因 구명과 被害金額 계산이 복잡한 中小規模 영외 水産業에서 특히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施設共濟와 같은 物的共濟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진다.

VII. 水産共濟料率의 算定

1) 共濟料率算定の 一般的 要件

共濟料率(premium rate)이란 일정한 共濟單位에 부과하는 共濟價格이며 共濟料를 算出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共濟料率算定이란 共濟單位當價格을 決定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共濟料率의 決定은 일반적으로 共濟者의 과거 경험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共濟者의 過去經驗이란 주로 과거에 경험한 위험의 손실액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算定된 共濟料率은 그것으로서 장래 일어날 수 있는 共濟事故로 인한 損失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장래의 共濟事故가 과거의 經驗과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의 損失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그것은 共濟者와 被共濟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共濟料率이란 共濟者가 각 共濟單位 또는 危險單位에 부과한 共濟價格이며 그 共濟單位는 共濟種目에 따라 달라진다. 곧 施設共濟의 單位는 施設을 단위로 해야 할 것이며 生物共濟에 있어서는 그 當該生物을 하나 하나 헤아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個體를, 그것이 거의 不可能할 경우에는 施設物을 單位로 할 수 있다. 굴 養殖에 있어서는 굴 종묘의 附着器를 그리고 미역과 김 養殖등에 있어서는 單位施設의 기리 또는 발대에 부착하는 生物의 정도여하(量)를 單位로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單位當의 共濟料率의 算定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過去의 經驗이 풍부하면 할수록 「大數의 法測」의 適用에 있어서 有利한 結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經驗과 또한 그에 필요한 各種 費用(原生産原價)의 實積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合理的인 推定值로서 代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곧 共濟目的의 피해를 調査하여 共濟集團(有効需要)과의 관계에서 危險率을 추정하여 算定한다.

保險料率 算定の 一般的 要件에서 불배 共濟料率의 算定도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諸要

件을 充足하는 범위에서 決定되는 것이 有益하다고 생각된다.²⁵⁾

첫째, 共濟料率은 가능한한 充分해야 한다.

共濟者는 共濟契約者나 被共濟者를 保護(Protection) 또는 保障(Security)을 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특정된 共濟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 비로소 共濟契約者와 被共濟者가 約定한대로 有型化하여 共濟金으로서 支給하게 되므로서 나타난다. 이와같이 共濟料率은 約束대로 共濟金의 支拂을 이행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고 적정할 뿐 아니라 또한 위험을 인수하고 管理하는데 필요한 經費의 支出에도 충분한 정도라야 한다.

둘째, 共濟料率은 過度해서는 안 된다.

共濟料率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共濟料 料率이 適當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共濟料率의 適宜性은 곧 被共濟者의 負擔能力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러한 適宜性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絶대로 共濟者가 共濟契約者 또는 被共濟者에게 너무 과도한 共濟料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共濟料率은 너무 差別的이어서는 안 된다.

共濟料率의 算定에 있어서는 먼저 모든 危險을 여러가지 基準에 의해서 分類하여 區別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差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分類에 속하는 危險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共濟料率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同一率로 통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네째, 共濟料率은 事故防止를 장려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共濟는 본래 共濟事故가 발생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共濟契約者나 被共濟者의 經濟損失을 補償하여주는 것이 主目的이다. 그러나 社會的인 觀點에서는 事故가 일단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곧 社會全體의 損失이 되는 것이며 만일 事故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만큼 社會全體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므로 共濟란 事故 발생에 對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고의 미연방지도 또한 필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다. 共濟者가 事故의 미연방지에 접하는 方法은 共濟料率을 통한 것이다. 곧 共濟分野에서 諸般事故防止策을 미연에 講求하여 각종 施設과 設備를 갖추게 하고 그것을 共濟契約者나 被共濟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共濟契約者나 被共濟者에 부과하는 것 보다도 낮은 共濟料率을 적용한다든가 함으로써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다섯째, 共濟料率은 비교적 安定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伸縮性이 있어야 한다.

共濟料率은 한번 算定되면 특별한 事由가 없는 경우에는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共濟料率이 자주 변경되며는 共濟의 根本目的에 위배되는 問題를 助長시키게 되는 結果를 초

25) 여기에서 설명하는 共濟料率의 一般的 要件은 方甲洙 教授의 保險料率算定의 一般적 要件은 共濟料率算定에 맞추어 본인이 번안해 본 것이다. 方甲洙著, 最新保險學—理論과實際—博英社, 1975. pp174~181參照.

水産共濟에 관한 研究

태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렇게 되며는 共濟者의 對 社會關係가 惡化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일단 算定된 共濟料率일지라도 변경에 대한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固定하여 實施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逆效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섯째, 共濟料率은 市場性을 고려해야 한다.

共濟도 일종의 社會經濟制度이므로 社會의 公益性 公正性을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濟를 業界에서 活用하면 할 수록 業界의 經濟的 地位는 向上될 수 있고 따라서 각종의 社會惡과 폐단도 除去될 수 있을 것이므로 共濟를 業界에서 널리 活用하게 하기 위해서는 料率이 낮을수록 共濟라고 하는 市場 곧 有效수요는 더욱 擴大되어 갈 것이다.

이상에서 共濟料率 算定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一般的인 要件을 몇가지 소개해 보았으나 그 중에서 최초의 1) 2) 3)은 一般保險에 있어서의 料率算定에서는 불가결의 필수要件으로 되어있으며 뒤의 4) 5) 6)은 保險者가 任意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곧 부수적인 要件이다 하고 있다. 그러나 共濟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나 任意的要件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나 가능하다면 이러한 諸要件을 충분히 고려한 共濟料率일수록 그의 타당성 公正성 公평성을 높게 評價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水産共濟에서는 그러한 諸要件의 충족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水産業者는 영식하므로 예를 들면 위선 充分性의 충족을 위해서만 보더라도 共濟料率이 너무 높게 될 것이 예상되며 그렇게 되며는 被共濟者의 負擔能力으로 보아 適宜性을 상실하게 되며 過多性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水産共濟에 있어서의 共濟料率의 算定에서는 充分性 適宜性을 고려할 수 없는데서 共濟事業自體의 存立은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 영세 水産業을 對象으로 하는 共濟의 存立을 위해서는 國家의 各별한 支援없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된다.

水産共濟에 대한 國家支援은 日本과 같은 데에서도 볼 수 있다. 곧 日本에서는 政府의 國庫에서 共濟料率의 많은 부분을 보조하고 있다. 보조의 범위는 小規模漁業의 계층에 따라 그의 比率이 다르나 대체로 30%~80%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그의 적용대상은 단독가입 계약자를 제외한 集團加入者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國家의 支援은 零細業者(中小漁業者)의 經營安定과 漁業協同組合의 共濟制度를 育成하는데 眼目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例에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마 日本에 못지 않은 많은 國庫支援이 없고서는 共濟料의 充分性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²⁶⁾

26) 前掲, 漁業災害補償法參照.

2. 共濟料率의 算定方法

水産共濟料率의 구체적인 算出方法에 관해서는 아직 整理된 것을 發見하지 못했기 때문에 明白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는 참고로 保險料率의 일반적 算定方法을 기초로 하여 보면²⁷⁾ 共濟料率의 算定方法도 保險料率 算定方式에 있어서의 集團危險料率(manual rate, class rate or tariff rate)과 個別危險料率(individual risk rate)의 적용을 받는다고 단정된다.

集團危險料率이란 共濟料率을 個個의 危險을 對象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同一하거나 類似的한 위험에 속하는 危險集團全體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각종의 위험을 일정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分類하여 그 分類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같은 共濟料率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 方法을 한편 平均値料率(average rate)方式이라고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同一分類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平均値料率인 共濟料率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가 다른 위험에 대해서는 다른 共濟料率을 적용하게 된다.

同一 종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 平均値料率을 적용하게 되면 그 平均値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料率에 해당되는 위험과 그 이하의 料率에 해당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同一料率을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다소의 不公正性을 면할 수 없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同一 種類에 속하는 危險內의 不公正의 程度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同一分類에 속하는 위험을 더욱 細分類하여 자기 다른 共濟料率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기에 한도가 있다. 곧 너무 지나치게 細分類하게 되려는 料率에 대한 신비성이 적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豫定한 確率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危險의 數를 될수록 많이 擴大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集團危險料率 算定方法에 의한 共濟料率 算定에서는 危險內의 公正性을 기한다는 것 보다도 共濟率料의 充分性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集團危險料率의 전통적인 算定方法을 일명 損失率方法(loss ratio method)이라고도 한다. 損失率方法이란 일정한 比率에 해당되는 共濟料는 損失을 補完하는데 充당된다고 작정하는 것으로서 災害共濟分野에 있어서는 損失率을 60%(그의 經費率 40%)로 정하여 이 比率에 해당되는 共濟料는 損失金支給으로서 支出되도록 하는 前提下에 共濟를 算定하는 것이다. 損失率(loss ratio)은 發生損失額(支拂金額)과 經過共濟料 共濟料와의 比率로서 表示된다.

이 損失率方法에 의하여 算定된 集團危險比率는 한번 算定되면 一定期間 계속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체로 5年間 계속 사용하면 共濟料率의 充分性이나 適當性을 검토하게 되

27) 方甲洙著. 前掲書. pp. 181~192參照

水産共濟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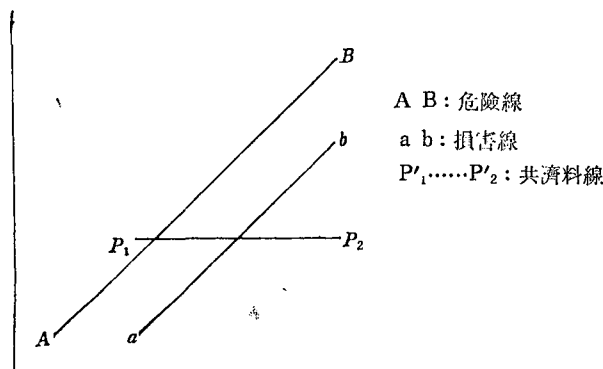
어 있다. 이와 반대로 短点으로서는 각 危險內의 公平性 유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料率의 充足性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 分類에 속하는 危險을 다시 細分화하는 수정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것을 純共濟 料率方法(pur premium method)이라고도 한다.

純共濟料率方法에 의한 共濟料算定이란 損失率方法에 의한 算定보다 分析的이며 統計的인 것으로서 먼저 危險의 분류를 결정하고 이 분류에 속하는 위험 損失額과 共濟單位를 比較하여 共濟料率을 算定하게 된다. 곧 어떤 분류에 속하는 全危險의 손실액을 기초로 하여 純共濟料를 計上하고 이 損失額을 共濟單位의 總數로 除한 후 共濟料率을 共濟單位로 表示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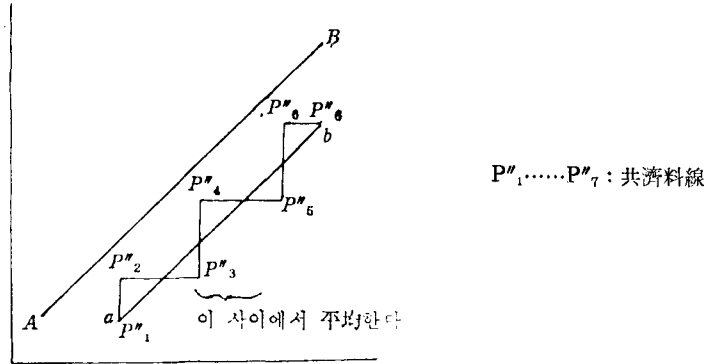
이와같이 純共濟料率方法에 의한 共濟料率 算定에 있어서는 損失率方法과는 달리 共濟單位를 위주로 하여 共濟單位 손실액에 의거하여 料率이 결정되는데 어떤 共濟期間의 共濟單位當 損失額이 前期間보다 많을 경우에는 共濟料率을 올리고 그와 반대로 共濟單位當 損失額이 적을 경우에는 共濟料率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純共濟料率 方法에서는 共濟料率의 充分성과 公正性 및 公平性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곧 損失率方法의 경우와 같이 한 種類에 속하는 危險 전부에 대해서 같은 共濟料率을 부과하고 그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의하여 共濟料率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류에 속하는 위험을 다시 細分類하여 各 分類에 속하는 危險의 經驗에 의하여 共濟料率이 變動되는 것이므로 料率決定에 있어서 危險間의 經驗의 相違를 고려하는 程度가 비교적 큰 方法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集團危險料率方式 곧 損失率方式(平均共濟料率方式)이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損害를 總量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완전히 平均하여 하나의 共濟料를 算出하는데 대해서 純共濟料率方式(修正平均共濟料率方式)이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損害를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그의 단계내에서 平均

<그림-1> 平均共濟料率方式



<그림 2> 修正平均共濟料率方式



化한 共濟料率을 산정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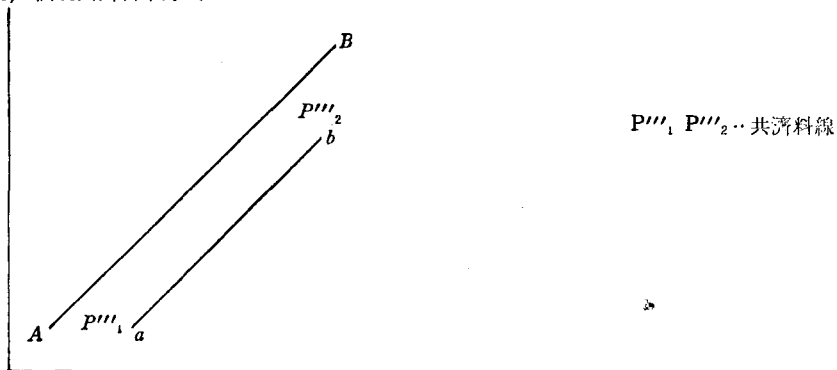
다음에 個別危險共濟料率方法이란 自助의 立場과 個人主義的인 自己 責任을 主軸으로 하는 方式이다. 곧 이 方式에 있어서의 共濟料率이란 危險과 所得의 對應關係가 있는데서 결정되며 또한 損害防止活動이나 施設의 個人 및 國家的 達成의 可能性과 그의 노력도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危險과 損害가 平行關係에 있으므로 자연 共濟料도 그들과 平行關係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損害額과 共濟料도 일치하게 된다. 이 關係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리고 이 個別危險共濟料率方式에서도 損害를 加급적 細分化하여 단계화하고 각 단계에서는 平均的인 共濟料를 적용하게 하는 修正方式이 실제 사회에서는 널리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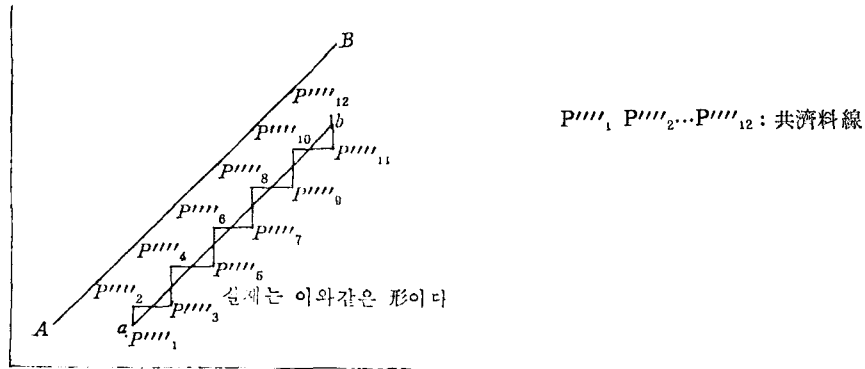
이것을 修正個別共濟料率方式이라 하며 도시하면 <그림-4>와 같다.

個別危險共濟料率의 구체적인 算出方式에는 保險料率算出方式으로 보아 豫定料率算出方式 經驗料率算出方式 遞及料率算出方式 判斷料率算出方式 등으로도 區分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은 피하기로 한다.

<그림-3> 個別共濟料率方式



〈그림 4〉 修正個別共濟料率方式



이상에서 一般保險料率算定方法을 變換하여 共濟料率算定方法으로서 간단한 설명을 해보았으나 이들 諸方法에 있어서 集團危險分類에 의한 共濟料率算定方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동일 分類나 細分類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같은 共濟料率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個別危險分類에 의한 共濟料率 算定方法에 있어서는 個個의 共濟目的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위험의 經驗을 토대로 하여 共濟料率을 산출하여 共濟料率의 充分性 適合性 公正性 등을 기하도록 調整해야 하는데 特徵이 있다.

그러나 共濟料率의 算定方法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共濟料率算定方法이던 거기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變素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共濟者의 補償責任限度가 事故에 關係하여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個別共濟와 多數危險에 의한 集團共濟 등에 關係된 事故에 대해서 그의 共濟限界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共濟金의 多소에 따라서 共濟料率이 항상 一定한 경우와 公제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共濟料率이 적어지는 것과 같은 流動性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共濟의 對象으로 하는 위험의 種類에 따라서 共濟料率은 變化될 수 있다. 곧 共濟料率 算定을 위한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구분을 하여 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의 被害의 程度까지도 위험분류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험분류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共濟의 保護를 원하는 共濟契約者나 被共濟者의 性格과 信用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共濟者가 共濟契約者나 被共濟者에 대하여 약속하는 共濟를 통한 共濟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허위적인 損失發生을 빙자하여 公제를 청구하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넷째, 公제의 대상이 되는 事故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區域(海域)에 따라 다르므로 위험이 위치하고 있는 海域은 共濟料算定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상에서 일반적인 共濟料率算定方法에 관해서 공동적으로 요구되는 몇가지 요소에 대해

서 간단히 설명해 보았으나 問題는 이러한 諸要素를 고려하여 水産業의 實情에 부합되는 共濟制度를 위한 共濟料率体系의 確立을 여하히 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結 論

水産共濟는 保險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역인 水産業災害의 對策手段이다. 따라서 그의 機能에 대해서는 水産經營상의 損失에 대한 回復에 目的을 두고 保險에서와 같은 數理技術은 절대적인 요건이 될 수 없다는 災害補償의 觀點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水産共濟는 水産危險에 대처되는 일종의 經濟制度이며 그것이 經營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損失의 회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經濟保障뿐 아니라 不確實性을 감소시키고 영세 水産經營者の 金融的側面에서 까지도 有效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社會의 요구에 적응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水産共濟는 金후 水産災害의 存在와 그의 救濟를 위한 重要性에 대한 인식과 水産生産力의 증대에 의한 稼得水準의 상승에 따라서 더욱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水産業의 災害에 대한 保障과 經營安定에 한층 더 効率性을 발휘할 수 있는 國家的 次元에서의 共濟制度의 確立이 研究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釜山水大)